

## 대학원 집중이수제 운영 규정

제정 2022.09.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 대학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대학원 집중이수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집중이수제"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교과목별 학점당 이수시간(학점당 15시간 이상)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15주 보다 짧게 수업일정을 단축하여 단기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정규학기에 학점을 인정받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집중이수제를 진행하는 학부(과) 또는 부서를 말한다.
3. "집중이수교과목"이란 실기·실험·실습 등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집중수업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제3조(강좌개설)** ① 집중이수제의 강좌개설은 대학원 학과(전공)별 교육과정표에 있는 교과목 중에서 개설한다.

- ② 집중이수제 수업은 학칙 제12조에 따라 학점 당 15시간 이상 진행해야 한다.
- ③ 주관부서는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강의일정, 강사, 성적 평가 등을 명시한 수업운영계획서 [서식1]을 대학원 교학팀에 송부 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는다.
- ④ 집중이수제 개설시기는 정규학기 중(방학 기간 포함) 일정기간을 정하여 개설할 수 있다.

**제4조(집중이수교과목 운영)** ① 집중이수제 수업은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강사 및 비전임교원이 담당할 수 있다.

- ② 집중수업의 수업방식, 성적처리 등은 정규학과와 동일하게 운영한다.
- ③ 집중이수제로 이수할 수 없는 졸업필수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 단, 원격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논문작성법(연구윤리)
  2. 연구실 안전관리
- ④ 마지막 학기(수료학기 포함)에는 집중이수제를 이수할 수 없다.

**제5조(학점제한)** 집중이수제로 취득 가능한 최대 학점은 학기 당 9학점으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교육과정 및 이수)** 집중이수제 교육과정은 정규학기 교육과정에 따르며, 이수기준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7조(수업시간표 및 강사료 등)** ① 매 학기 수업은 개강 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② 집중이수제 선발 학생은 매 학기 수강할 교과목을 전공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 ③ 집중이수 교과목에 대한 강사료 지급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성적평가)** 성적인정 기준은 학칙 제21조에 의하며, 성적인정 시기는 집중이수제 수업종료 후 5일 이내로 한다.

제9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